#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024. 04. 30. 주택공간위원회

### I .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3. 최재란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4. 4. 8.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4. 30. 상정·의결)

### Ⅱ. 제안설명 요지 (최재란 의원)

### 1. 제안이유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성과 기반의 사무국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예정 또는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에 대한 소관 상임 위원회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17조제5항)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이하 "기구")(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 시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24년 4월 3일 최재란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개정안 주요내용(안 제17조제5항)>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고
제출문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	제출문서 추가
(시장 → 시의회)	사업정산서	사업결과	
보고문서		사업계획서	
(시장 → 시의회	_	사업정산서	보고의무 신설
소관상임위원회)		사업결과	

- 서울시는 기구 설립(2010.9.7.) 이후1) 2013년까지 시에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14년 1월 사무국을 독립시킨 이후, 국제부담금 및 공무원 파견 등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2)에 근거하여 지원해 오고 있음(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17조</b>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생 략)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1. ~ 2.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u>사업</u> <u>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u>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5) ------사업 <u>계획서,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사업</u> -----<u>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u>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 제17조제3항에서는 기구가 시장에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구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 결과 및 정산서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

<최근 3년간 기구(WeGO) → 디지털정책관 자료제출 현황>

일 자	내 용	근거규정
2022. 1.19.	<ul> <li>▶ 2022년 WeGO 주요사업계획(최종)</li> <li>▶ 2022년 1분기 예산교부 신청서</li> <li>▶ 2022년 1분기 사업예산 세부내역</li> <li>▶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li> </ul>	
2022. 1.21.	▶ 2021년도 WeGO사무국 국제부담금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	
2022. 8.16.	▶ 2023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u>조</u> 리	
2023. 1.16.	▶ 2022년 WeGO사무국 국제부담금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 ▶ 2023년 WeGO사무국 주요사업계획(최종)	제17조제3항
2023. 7.19.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2023.10.23.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_수정제출	
2024.1.25.	▶ 2023년 WeGO사무국 국제부담금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	

※ 출처 : 디지털정책관 제출자료 정리

<sup>1) 2010</sup>년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로 공식 창립하여 2017년 러시아 울랴놉스크 주에서 열린 제 4차 WeGO 총회에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로 개명하였음.

<sup>2) 「</sup>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시장은 세계 스마트시티기구[(WeGO), 이하 "기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sup>1.</sup>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sup>2.</sup>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

○ 한편, 제17조제5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기구로부터 **사업 계획 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디지털정책관은 매년 11월 기구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오고 있으며, 2~3월에는 기구의 전년도 사업 정산서와 당해연도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오고 있는 상황임.

<최근 3년간 디지털정책관→서울시의회 자료제출 현황>

일 자	내 용	근거규정
2022.11. 7.	▶ 2023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2023. 3.17.	▶ 2022년 국제부담금 정산서 ▶ 2023년 WeGO 주요사업계획	조례
2023.11.17.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b>제17조제5항</b>	
2024. 2. 6.	▶ 2023년 국제부담금 정산서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	

※ 출처 : 디지털정책관 제출자료 정리

- 따라서, 현행 규정상 시장은 기구로부터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음에도 시의회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정산서만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17조제5항에서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업결과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시장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사업 정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은, 사무국 운영의 투명 성 제고 외에도 세부 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기구의 투명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개정안에 따른 보고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보고내용	없 음	▶시장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고문서 :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 사업결과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정책관은 사업 계획서의 경우 매년 2회(전년도 7월 및 당해 연도 2월), 사업결과와 사업정산서의 경우 매년 1회(다음연도 2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제기구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다소 경직된 운영을 초래하여 회원국들에게 과도한 관리·감독으로 비춰져 글로벌 공신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디지털정책관의 의견③이 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도모하고 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시기를 연초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정안 수정도 검토가 가능하겠음.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세계스마트시티 기구의 활동지원을 위해 기구 사무국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의 원활한 관리감독 및 업무파악을 도모하고자기구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구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매년 서울시의 인력과 재원(국제부담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성과기반의 사무국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

<sup>3)</sup> 디지털정책담당관-4880(2024.04.18.),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국제기구 운영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고의무' 신설로 인해 국제기구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기구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21년도 대비 195% 증가), 회비징수율('23년도 30.2%로 '21년도 대비 4.2%p 증가) 및 징수액('23년도 222,296천원으로 '21년도 대비 8.5% 증액)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미미한 실정이며, '23년도 기준 기구의 회원국 회비가 서울시 지원액(국제부담금)의 12.9%에 불과한 실정인바(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 선진도시 및 대기업 회원 유치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등 회비 납부율 증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부담금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019~2023년도 WeGO 예산 및 회비 비율>

구 분	<b>WeGO 총예산(A)</b> (A=B+C)	<b>서울시 지원액(B)</b> (국제부담금)	회 비 (C)	회비 비율(D) (D=C/A*100)
2019	1,383,123천원	1,194,572천원	188,551천원	12.6%
2020	1,439,129천원	1,262,000천원	176,629천원	12.3%
2021	846,089천 원	641,238천원	204,851천원	24.2%
2022	825,720천원	641,238천원	184,482천원	22.3%
2023	1,943,906천원	1,721,610천원	222,296천원	11.4%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 Ⅵ.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를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로 수정한다.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1692

제안일자: 2024. 04. 30. 제 안 자: 주택공가위워장

### 1. 수정이유

○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안 제17조제5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의무를 제출로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로 수정함.(안 제17조제5항)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로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
구 지원) ① (생 략)	구 지원) ① (현행과 같	구 지원) ① (현행과 같
	승)	승)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⑤	⑤
사무총장으로부터 <u>사</u>	<u>사</u>	
업 계획서 및 사업	업 계획서, 사업 결과	
<u>정산서</u> 를 제출받은	<u> 및 정산서</u>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	<u>서울특별시의회 및</u>
출하여야 한다.	출하고, 이를 소관 상	<u>소관 상임위원회에</u>
	임위원회에 보고	<u>제출</u>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및 정산서"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을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부터 <u>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u>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u>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u> 하여야 한다.	⑤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및 정         산서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	
	<u>원회에 제출</u>	